



본란의 기사는 미국내 통상전문회사인 Manchester Trade社의 통상보고서 및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본會國際部(TEL.:553-0941/7)로 연락 바랍니다.

1.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일본에 새로운 제재조치 경고

미 반도체 제조업체의 최고경영자들은 워싱턴에서 회동을 갖고 미·일 반도체협정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미국 반도체 공업협회(SIA)는 현시점에서 일본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일본이 미·일 반도체협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면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SIA의 이번 결정은 미국산 뿐아니라 외국산 칩을 구매하는 컴퓨터 제조업체들을 소외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SIA는 외국산 반도체의 대일시장 점유율이 미·일 반도체 협정에 규정된 목표기준치(Benchmark)인 20%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14%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Micron Technology Inc社(현재 DRAMs를 생산하는 3개 업체중 1개 업체)의 회장 겸 미국반도체공업협회의 회장인 조우파킨슨은 덤핑행위가 다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의하면 파킨슨 회장은 미국 제조업체를 차별하는 외국의 반도체 수입품에 14%의 관세를 부과하는 입법추진을 촉구했다. 파킨슨 회장은 Micron사에 의해 가격 및 코스트 분석을 기준하여 불매 몇몇 업체들은 불법적으로 코스트 이하 가격으로 반도체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업체를 거론하지 않았으나 워싱턴 포스트지는 삼성전자, 도시바, 히타치, 미시비시전기, NEC 등의 업체가 덤핑행위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파킨슨 회장의 제안은 명백한 덤핑행위

를 보지못했다는 SIA의 기타 회원업체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미 관세청, 새로운 규정에 대한 대통령의 조치유예로 인하여 제품통관 사용료(MPF)의 인상을 지체.

미 관세청, 1992. 1. 28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발표된 새로운 규정들에 대한 대통령의 90일간의 조치유예(Moratorium)로 인하여 제품 통관 사용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 MPF)가 기존에서 0.02% 오른 0.19%로 인상하는 최종규정의 발표를 지연했다.

또한 조치유예와 관련하여, 미 관세청은 세관 규정이 복잡하고 진부하며 또한 비용절감의 효과가 없는 조세규정의 파악을 위해 모든 관세 근무자와 일반인에게 질의서(Questionnaire)를 발부하고 있으며 본 질의서에 대한 회신은 1992. 3. 25까지 미 관세청에 접수되어야 한다.

3. 록펠러 미 상원의원, R&D 법안상정

1992. 2. 27 존 록펠러 미 상원의원(민-서부 버지니아주), "1992년 첨단기술 자본 콘소시엄법(Advanced Technologies Capital Consortium Act of 1992)"을 상정했다. 동법안은 미상원 무역 과학 교통위원회로 이송되었다.

이와 비슷한 법안이 로버트 토리셀리 하원의원(민-뉴저지주)에 의해 미 하원에 상정되었다. 동법안의 입법목적은 다음과 같은 첨단통신 및 정보기술을 지원키 위해 국내 Venture Capital의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Venture Capital

의 부족을 시정하는데 있다.

컴퓨터, Fiber-optics, Flat Panel Imaging, 차세대 반도체 제조, 항공, Smart Highways, Magnetic Levitation 분야의 첨단 교통기술, Composites, Ceramics 및 High Performance Metals와 같은 첨단소재 등 동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요기술 R&D에 관여한 재계, 학계, 재단, 주·지방정부로 구성된 첨단기술 자본 콘소시움(Advanced Technologies Capital Consortium : ATCC)의 창설과 同 ATCC는 적어도 중요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4개의 기업체가 포함된다.

미 상무부 장관은 50 : 50 비율의 콘소시움으로 조화되는 ATCC에 자금보조 및 대부(Grants & Loans)로 본 자금은 연구, 개발, 중요기술의 응용 또는 상업화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보조 및 대부로서 사용된다.

ATCC에 대한 정부의 자금보조는 매년 2억 달러인데 1억달러는 첫 해에 그리고 2억달러는 매년 차기 2년 동안에 제공된다.

록펠러 상원의원은 R&D 뿐만아니라 기술산업화에 사용되는 미 표준기술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NIST)의 자금보조를 허용하는 법개정의 통과를 또한 촉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에 미 행정부는 그와 같은 법개정이 산업정책의 이유로 포함될 경우 NIST의 자금지원 인가를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록펠러 상원의원은 민주당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므로 대통령 선거전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다면 그의 법안은 통과될 좋은 기회를 갖게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시 행정부가 최근 경제 침체에 대한 압력으로 인하여 산업에 대한 그와같은 정부의 자금 지원에 반대해온 평상시의 자세를 반복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4. 솔츠 하원의원, 한국 및 대만과의 자유 무역협정 제언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위원인 리차드 솔츠

하원의원(민-펜실베니아주)은 '92. 3. 4 대통령 이 한국 및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촉구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입법화에 관한 논평에서 솔츠 하원의원은 동법안의 입법추진은 이미 상당히 추진된 한국 및 대만 양국의 시장개방 지속,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경제대국이 아니라는 점을 일본에 시사, 그리고 GATT의 “진정한 세계무역의 자유화” 달성을 촉진시키는데 있다고 언급했다.

'92. 3. 11,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무역소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솔츠 하원의원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의 다자간 또는 쌍무간 협정의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칼라힐즈 USTR대표에게 질문을 했다.

칼라힐즈 USTR대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미국이권에 중요하며 우리는 이 지역의 국민들과 친밀한 관계 유지를 희망한다”는 솔츠 하원의원의 견해에 동감하였으나 미 행정부가 FTA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칼라힐즈 USTR대표는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협력위원회(APECC)를 지지하며 아세안(Asean) 국가들과 무역 및 투자관련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말하고, 미국행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를 “세계와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World)”으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5. 한국, 금년말까지 금융시장 자유화 계획 제출기로 합의

'92. 3. 12, The American Banker지 보도에 의하면, 한국은 '92년말까지 금융자유화 계획을 제출기로 합의했다. 미 재무부 관리들은 한국이 금리자유화, 외환 및 자본금통제철폐, 원화(W)의 여신한도 개선, 자본시장의 발전 추진, 규정의 명확화를 희망했다. 동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행들이 비밀리에 불만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미 재무부에 송부했다는 미확인 소식에 한국이 자극 받았음을 시사했다. 연합통신에 의해 보도된 것처럼 본 청원서의 내용은 미국

은행의 금리와 여신에 대한 철저한 규제, 원화로 전환될 수 있는 외환금액의 제한, 일관성없고 일방적이고 불명백한 규정의 적용 등에 대한 것이다. 미국관리들은 그와같은 비밀 청원서의 접수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으나 그와같은 사안들이 제4차 한·미 금융 회의에서 협의되었음을 인정하였다.

1990년에 시작된 금융부문 협상은 '92. 1월 부시 대통령의 방한이후 촉진되었다. 금융시장 개방 압력은 미 의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행에 대하여 상응한 시장접근을 부여하지 않은 국가의 미국내 은행활동을 규제토록하는 미국의 금융서비스 공정무역법(Fai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Act)에서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동법안 입법화는 주로 한국과 일본에 목표를 두고 있다. 동법안이 통과되면, 미국내에 80억달러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계 은행 자산의 운명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내 한국계 은행들의 자산은 1991년 6월말 현재 12개월 동안 26.5% 증가했다.

6. 미국 컴퓨터 업체, NAFTA의 원산지 규정안에 불만

미국 컴퓨터 제조업체들은 미국의 NAFTA의 원산지 규정안을 반대했다. 미국의 원산지 규정안에 따르면, NAFTA의 무관세 대우 자격은 컴퓨터의 경우 3가지 중요 부품중(마더보드, 디스플레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2가지 부품이 북미에서 생산된 것이어야한다.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컴퓨터가 무관세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마더보드가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동규정안은 랩탑(Laptops)를 포함하여 모든 컴퓨터에까지 해당되며 미국내에 Flat Panel Display 제조업체들이 부재하다는 인식때문에 최소 3년 동안은 발효되지 않을 것이다. CSPP(Computer Systems Policy Project)를 대표하는 미국의 컴퓨터 제조업체들은 현행 FTA규정을 강화한 NAFTA의 원산지 규정안은 미·캐나다간의 컴퓨터 교역

에 3.9%의 관세를 부과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전자협회(AEA)와 미국 컴퓨터·사무용기기 제조자협회(CBE MA)는 그들의 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에 의하면 AEA는 재무부안을 지지하는 Flat Panel Display 제조업체 회원사와 이에 반대하는 회원사간의 이견에 봉착해 있다. 미재무부는 미·캐나다 자유무역 협정내 원산지 규정은 마더보드가 약 5년전에 컴퓨터의 부가가치중 50%에 비해 현재는 단지 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여름 일본에 대한 ITC의 반덤핑 청문회에 따르면 Flat Panel Displays는 현재 컴퓨터의 부가가치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7. EC조약 85조에 따른 협력적인 J/V에 대한 처리

EC집행위는 EC조약 85조에 따라 협력적인 J/V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본 지침은 대기업, J/V 그리고 제3국 업체간의 경쟁력에 관한 J/V의 효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어느 J/V가 규정협정과 85(3)조항하의 여러 예외사항에 관한 금지 조치로의 해당 가능성을 평가했다.

8. 핀란드, EC가입 발표

핀란드는 EC의 가입결정을 발표하였으나, Maastricht 조약의 서명에 따르는 EC의 정치적 및 군사적 협력목표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중립성을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향후 경제 및 금융통합(EMU)에 대비키 위해 경제 및 금융 프로그램을 채택할 예정이다.

9. 향후 EC의 확장

Sir Leon Brittan EC집행위 부의장은 Maastricht 조약에 규정된 전반적인 사안과 일

치하는 향후 EC의 확장에 관한 사건을 밝혔으며 EC는 단순히 적절한 가입대상국과의 협상보다는 오히려 대상국의 가입신청을 고려, 가입을 희망하고 가입할 준비가 되어있고 가입할 수 있는 유럽 국가들을 반드시 수용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규 EC 회원국들은 회원국의 주요의무를 지우지 않는 엄격히 제한된 과도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정규 규정에서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데 향후 국방정책과 관련한 Maastricht에서 취해진 공동 대외정책과 공약이 포함된다. 신규 회원국들은 적어도 지리상으로 유럽국가이어야만 되며 유럽의 국경선이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대한 어렵고도 중요한 의견 불일치가 내재하고 있다.

10. 일본 복사기 제조업체, EC의 A/D 관세 번복에 실패

9개 일본의 복사기(Photocopier Plain Paper) 제조업체들은 EC가 5년간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번복하는 법적 노력에 실패했다. EC사법재판소는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일본의 8개 업체가 EC에 수출한 복사기에 부과한 20%와 9개 업체 및 Mita Industrial사 産 복사기에 부과한 12.6%의 반덤핑 관세를 확인했다. EC 집행위는 현재 일본산 복사기 수입으로 입는 피해를 부분적으로나마 철폐해야 한다는 제소이후 지난달 만료된 반덤핑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기간 중에는 본 반덤핑 조치가 유효하는데 EC 집행위가 Full Review를 결정하는데는 6개월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11. EC 집행위, 일본산 Outboard Motor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검토

EC 집행위는 일본산 Outboard Motor 수입품에 대해 1987년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3월중

료이후에도 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 EC의 Outboard Motor 제조업체들에 의하면 본 반덤핑 관세철폐는 EC내 Motor의 급격한 가격하락을 초래시킬 수 있으며 반덤핑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국가에서의 가격은 훨씬 낮으며 반덤핑 조치가 취해진 국가에서도 EC 제조업체들은 침체된 시장에서 일본산 수입품으로 시장 근거지를 상실했다.

12. Sir Leon Brittan EC 집행위원, GATT의 명확한 경쟁규정 촉구

Sir Leon Brittan EC 집행위원은 보조금, 카르텔, 통합정책 및 공공 단독정책(Public Monopolies)에 관한 GATT의 세계적 규정의 설정을 촉구했으며 본 규정은 반덤핑 제소와 같은 제한된 해결을 통하여 현행 다루었던 불공정 무역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GATT의 적용범위(Coverage)와 시행 메카니즘은 또한 보조금에 관한 분쟁해결 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하며 수공할 수 있는 산업협력과 수공할 수 없는 규제 관행을 구별하는, 카르텔 관련 규정에 관한 명백한 합의와 합병(Merger) 케이스를 논의할 포럼을 제공하는 GATT의 분쟁해결 절차의 설정을 촉구했다.

13. First Instance 재판소의 권한 연장

EC 집행위는 반덤핑 케이스와 국가보조금 케이스에 관한 EC First Instance 재판소(Court of First Instance)의 권한을 연장시키는 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First Instance 재판소의 권한은 EC의 경쟁 규정과 관련한 케이스와 EC 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관련된 문제에 한정되어 있다.